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

2017. 8

1. 개요
2.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가.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 나. 식품안전 사전예방
 - 다. 식품안전 정보관리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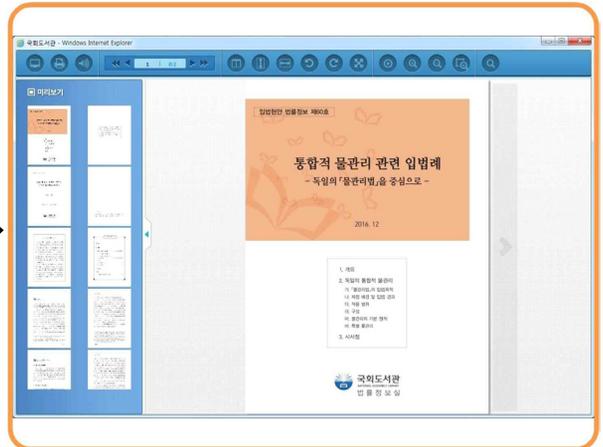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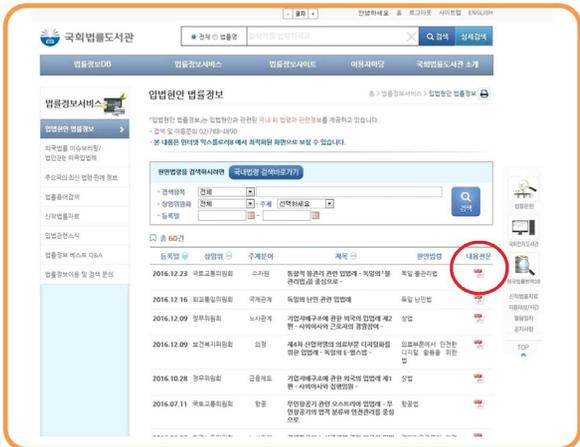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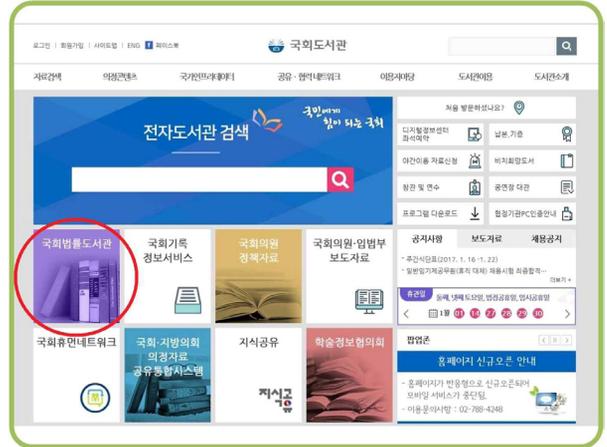
「입법현안 법률정보」 원문보기 안내

[국회전자문서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문서시스템 → 국회정보시스템 → 국회법률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국회법률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수록한 입법 참고자료입니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

2017. 8

작성자 :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법학박사)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Keywords〉

식품안전 관리체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식품안전 모니터링, 식품 4.0 (레벤스미텔 4.0),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연방위험평가원

요 약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근거한다. 동법은 유럽연합의 식품 관련 일반법규인 「유럽공동체법령 178/200호」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로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유럽의 광우병 파동 이후 유럽과 독일에서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연방식품노동부(BMG)로 일원화하여 산하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밭에서 밥상까지 식품안전관리 7원칙”을 세우고 있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예방을 중시하고, 유해물질 등을 반복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하는 폭넓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 의사소통 관리는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 관리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투명한 정보공개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주제인 “산업 4.0”(인더스트리 4.0)에 더불어 “식품 4.0”(레벤스미텔 4.0)이라는 관점에서 식품안전 정보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목 차

【요약】

1. 개요	1
2.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5
가.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5
나. 식품안전 사전예방	10
다. 식품안전 정보관리	16
3. 시사점	22

1. 개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¹⁾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²⁾

그 밖에도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학교급식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먹는 물 관리법」 등 다수이다. 이러한 복수의 법률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방식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주체가 다수 존재한다.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방식은 식품의 특성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유형 등에 합당한 구체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안전망 형성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사전 예방에도 취약하다는 지적 및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³⁾ 제19대 대통령 공약에서도 식품

1)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

2)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1조

3) 국회의원 류지영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미래 방향, 2013.

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 예방의 필요성, 정보 관리의 중요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⁴⁾

독일은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⁵⁾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동법은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의 유통에 있어서 기망을 방지하며 경제참여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⁶⁾ 동법은 유럽연합의 식품에 관한 일반법규인 「유럽공동체법령 178/2002호」⁷⁾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⁸⁾ 식품안전이 문제되는 상황별,

1. 2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령 체계도, 2010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294회 국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187쪽: 정기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2. 24.: 광노성,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보 2009. 6.: 김준·배민식,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5호, 2008. 12. 12. 등 참조.

4) 제19대 대통령 공약 중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먹거리안전 정책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내용에 농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단계적 확대,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합구축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이 담겨 있음.

내일신문, “식품안전기능 농식품부로 이관” - 주요 대선후보 농정공약 ... 헌법에 농업가치 포함도, 2017. 4.2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5248 (최종 방문일: 2017. 7. 30.)

문재인 공약 “먹거리 안전정책 - 농장에서 식탁까지”, 문재인 공식 블로그, 2017. 4. 26.: <http://blog.naver.com/moonjaein2?Redirect=Log&logNo=220992350388> (최종 방문일: 2017. 7. 30.)

5)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 LFGB, 제정: 2005. 9. 1., 전면 개정: 2013. 6. 3. BGBl. I S. 1426, 최종 개정: 2017. 6. 30. BGBl. I S. 420)

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lfgb/gesamt.pdf

※ 번역문: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DB - 2012년 8월 3일 개정본의 번역문

6)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1조

7) VERORDNUNG (EG) Nr. 178/20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8. Januar 2002 zur Festlegung der allgemeinen Grundsätze und Anforderungen des Lebensmittelrechts, zur Errichtung der Europäischen Behörde für Lebensmittelsicherheit und zur Festlegung von Verfahren zur Lebensmittelsicherheit(식품법의 일반원칙 및 요청의 확정,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기구의 설립, 식품안전에 관한 절차규정의 확정을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각료이사회의 2002년 1월 28일자 규칙 제178/2002호)

단계별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가진다. 동 유럽공동체법령은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전통제품을 포함한 식품공급의 다양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식품과 관련한 인간의 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⁹⁾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1996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BSE) 파동을 겪은 후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유럽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1월 독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발견됨으로 인해 독일 내에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연방보건부(BMG)와 연방식품농업부(BMEL) 사이에서 혼선을 빚다가 연방식품농업부(BMEL)¹⁰⁾로 일원화하여, 산하에 2002년 5월 신설한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BVLG)¹¹⁾이다.

http://www.bfr.bund.de/cm/343/2002_178_de_efsa.pdf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PDF/?uri=CELEX:32002R0178&rid=1> (최종 방문일: 2017. 7. 31.)

http://eur-lex.europa.eu/search.html?DTN=0178&DTA=2002&qid=1483922252211&DB_TYPE_OF_ACT=regulation&CASE_LAW_SUMMARY=false&DTS_DOM=ALL&excConsLeg=true&typeOfActStatus=REGULATION&type=advanced&SUBDOM_INIT=ALL_ALL&DTS_SUBDOM=ALL_ALL (최종 방문일: 2017. 7. 31.)

※ 번역문: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DB

- 8) 동법에서 동 유럽공동체법령의 조문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제1조제1a항 및 제3항, 제5조, 제60조제3항, 제71조 등 참조.
- 9) 동 유럽공동체법령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는 광노성,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64호, 2014. 4., 79~100쪽; 김두수, EU 식품법 체계와 최근 입법동향(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3. 11. 13. 참조.
- 10) 연방식품농업부(BMEL: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의 홈페이지: www.bmel.de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참조점을 찾기 위해, 독일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감독청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설립취지, 연혁, 기능과 연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원칙을 살펴본다. 그리고 독일이 동법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제도와 식품안전 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동반되는 정보관리에 관하여 검토한다.

11)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mtes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Gesetz: BVLG, 제정:2002. 8. 6. BGBl. I S. 3082, 3084, 최종 개정: 2017. 6. 27. BGBl. I S. 1966) <http://www.gesetze-im-internet.de/bvlg/BVLG.pdf>

2.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가.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1)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동법은 다음과 같이 총 11개 장, 7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한 개별 법률(Gesetz)이 아니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포괄하는 종합법으로서 식품안전 관리 “법전”(Gesetzbuch)의 형태를 띤다.

-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4조)
- 제2장 식품의 유통(제5조~제16조)
- 제3장 사료의 유통(제17조~제25조)
- 제4장 화장품의 유통(제26조~제29조)
- 제5장 기타 생필품의 유통(제30조~제33조)
- 제6장 수권근거(제34조~제37조)
- 제7장 감독(제38조~제49a조)
- 제8장 모니터링(제50조~제52조)
- 제9장 수출 및 수입(제53조~제57조)
- 제10장 형벌 및 과태료 규정(제58조~제62조)

제11장 종결 규정(제63조~제75조)

동법의 규율 대상은 식품, 사료,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이다.¹²⁾ 각각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은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섭취하는,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식품에는 식품의 생산, 처리 또는 가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음료, 껌 및 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¹³⁾

‘사료’는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에게 먹이는 물질 또는 제품 및 첨가물을 말한다.¹⁴⁾

‘화장품’은 주로 인간의 신체 외부 표면이나 구강 내의 세척 또는 보호, 양호한 상태의 유지, 착향, 외모의 변화 또는 체취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의미한다.¹⁵⁾

‘생활용품’은 식품을 담거나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재료와 품목, 화장품의 포장지나 용기, 그 밖의 화장품과 접촉되는 외피, 구강 내 점막을 자극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이나 용품, 세면용품, 장난감과 변장용 소품, 신체와 지속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용품(의복, 침구, 마스크, 가발, 부위별 가발, 인공 속눈썹, 팔찌 등), 세제와 세정제, 섬유 가공제, 방향제와

12)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2조제1항

13)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2조제2항

동법에서 식품은 「유럽공동체법령 178/2002호」 제2조에서 의미하는 식품을 말한다.

14)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2조제4항

동법에서 사료는 「유럽공동체법령 178/2002호」 제3조제4호에서 의미하는 사료를 말한다.

15)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2조제5항

방향용품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을 포괄한다.¹⁶⁾

(2) 식품안전 관리 감독청의 일원화

독일에서 식품안전 관리 감독은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따라 연방식품농업부(BMEL)에 일원화되어 있고,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분리하여 각각의 산하 관청을 두고 있다. 즉 식품안전 위험관리는 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서, 식품안전 위험평가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에서 담당한다.¹⁷⁾ 이들 관청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행하고, 연방차원의 조정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¹⁸⁾

독일에서 국가에 의한 식품안전 관리의 역사는 1876년 카이저건강청을 베를린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고, 담당 관청의 이름은 1918년 제국 건강청, 1952년 연방건강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연방건강청은 건강한 소비자보호 및 수의약품을 위한 연구소(BgVV)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현재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2002년 5월 설립되었다. 2000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독일 내에서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연방, 각 주(州),

16)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2조제6항

17)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47조제2항

18)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홈페이지, “독일에서의 식품안전관리”(Lebensmittelkontrolle in Deutschland): www.bmel.de/DE/Ernaehrung/SichereLebensmittel/KontrolleRisikomanagement/_Texte/Lebensmittelkontrolle-in-Deutschland.html (최종 방문일: 2017. 7. 31.)

유럽연합에 걸친 강력한 소비자보호와 향상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2004년 로버트-코흐 연구소로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에 관한 허가권을 넘겨받았고, 2006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경제 유통에서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 감독청은 식품안전관리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예방” 업무에 무게중심을 둔다. 신속한 경고시스템을 통해 독일 연방에 걸쳐 식품안전 감독의 통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람의 먹거리에 한정하지 않고 식물보호제, 동물의 먹거리, 유전자변형물질의 허가에 대해서도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예방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 감독청은 연방식품농업부(BMEL) 산하의 연방상급관청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관할한다.¹⁹⁾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식품분야의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반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소비자보호식품안전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를 위한 행정규칙을 발하고 예외적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²⁰⁾ 연방차원의 이러한 조정과 관리감독에 연결되어 각 주(州)는 표본검사 및 기업 품질관리 등의 감시·감독업무를 담당한다.

19)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47조제2항제1문제1호

20)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68조제4항

(다) 밭에서 밥상까지 식품안전관리 7원칙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가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의 세부 규정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삼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밭에서 밥상까지²¹⁾ 식품안전관리 7원칙”이다.²²⁾

- (1) 산업계의 1차적 책임
- (2) 이력추적 가능성
- (3) 정부의 생필품 감독
- (4) 사전예방
- (5)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위험평가
- (6) 위험관리와 위험평가의 분리
- (7) 위험정보의 투명한 관리

식품안전관리는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1차적으로 관련 산업계에서 수행한다.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산업계의 자체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독일에서도 HACCP²³⁾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식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1) vom Acker bis zum Teller

22) 연방식품농업부(BMEL), “생필품안전에 관한 이해 - 사실 및 근거”(Lebensmittelsicherheit verstehen - Fakten und Hintergründe), 2016. 1., 2쪽.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홈페이지의 안내서 원문: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Broschueren/Lebensmittelsicherheit-verstehen.pdf?__blob=publicationFile

2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2005년 이래로 유럽 전역에 걸쳐 모든 식품의 유통과정은 기록되어야 하고,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식품사고의 원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역 중에 있는 동일 식품에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식품 포장에는 생산자와 감독관청 및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고유번호나 생산일자가 명기되어야 한다. 정부의 감독은 “산업계의 자체 감독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다양한 감독 및 심사를 행한다.

식품안전 관리는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는데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 식품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해가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먼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나. 식품안전 사전예방

독일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및 식물보호제, 중금속, 마이코톡신(진균, 곰팡이독) 등을 반복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하는 폭넓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⁴⁾

독일의 16개 주(州) 관할기관은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24)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0조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²⁵⁾ 모니터링은 전문성이 있는 자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각 주(州)의 관할기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표본을 요구하거나 추출할 권한이 있다.²⁶⁾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감시관은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또는 업무시간에 제품이 생산, 제조 또는 유통되는 토지와 사업장, 그에 부속되는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²⁷⁾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유주나 대리인은 표본의 채취를 용인해야 하며, 모니터링 수행자에게 식품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설을 안내하고 설명하며, 표본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²⁸⁾ 감시관은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채취의 목적을 알리고 표본 검사에 이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²⁹⁾

관할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의 통계, 정리, 문서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 전달한다.³⁰⁾

모니터링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조정에 따라 연방과 각 주(州)가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1년에 약 9천 개 이상의 견본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연방위험평가원(BfR)에 전달되어 식품 위험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³¹⁾

25)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1항

26)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2항

27)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3항제1문

28)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3항제2문

29)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3항제3문

30)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51조제5항

31) 연방식품농업부(BMEL), “생필품안전에 관한 이해 - 사실 및 근거”(Lebensmittelsicherheit

원 문	번 역 문
<p>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p> <p>§ 50 Monitoring</p> <p>Monitoring ist ein System wiederholter Beobachtungen, Messungen und Bewertungen von Gehalten an gesundheitlich nicht erwünschten Stoffen wie Pflanzenschutzmitteln, Stoffen mit pharmakologischer Wirkung, Schwermetallen, Mykotoxinen und Mikroorganismen in und auf Erzeugnissen, einschließlich lebender Tiere im Sinne des § 4 Absatz 1 Nummer 1, die zum frühzeitigen Erkennen von Gefahren für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ter Verwendung repräsentativer Proben einzelner Erzeugnisse oder Tiere, der Gesamtnahrung oder einer anderen Gesamtheit desselben Erzeugnisses durchgeführt werden.</p> <p>§ 51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p> <p>(1)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r Länder ermitteln den Gehalt an Stoffen im Sinne des § 50 in und auf Erzeugnissen, soweit dies</p>	<p>「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p> <p>제50조 모니터링</p> <p>모니터링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가 의미하는 살아있는 동물을 비롯한 제품에 포함된 건강유해물질 및 식물보호제, 약물학적 효능 등을 갖는 물질, 중금속, 마이코톡신(진균, 곰팡이독) 그리고 미생물 함유량을 각 제품이나 동물 개체의 표본 또는 동일 제품의 총량이나 다른 총량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p> <p>제51조 모니터링의 실행</p> <p>(1) 각 주(州)의 관할기관은 제품에 포함된, 제50조에서 의미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며, 일반 행정규정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p>

verstehen - Fakten und Hintergründe), 2016. 1., 10쪽.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홈페이지의 안내서 원문: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Broschueren/Lebensmittelsicherheit-verstehen.pdf?__blob=publicationFile

원 문	번 역 문
<p>durch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 vorgesehen ist, auf deren Grundlage.</p> <p>(2) Das Monitoring ist durch fachlich geeignete Personen durchzuführen.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rforderlich ist, sind die Behörden nach Absatz 1 befugt, Proben zum Zweck der Untersuchung zu fordern oder zu entnehmen. § 43 Absatz 4 findet Anwendung.</p> <p>(3)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rforderlich ist, sind die mit der Durchführung beauftragten Personen befugt, Grundstücke und Betriebsräume, in oder auf denen Erzeugnisse hergestellt, behandelt oder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sowie die dazugehörigen Geschäftsräume während der üblichen Betriebs- oder Geschäftszeiten zu betreten. Die Inhaberinnen oder Inhaber der in Satz 1 bezeichneten Grundstücke und Räume und die von ihnen bestellten Vertreter sind verpflichtet, die Maßnahmen nach Satz 1 sowie die Entnahme der Proben zu dulden und die in de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tätigen Person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zu unterstützen, insbesondere ihnen auf Verlangen die Räume und</p>	<p>원료에 포함된 물질의 함유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p> <p>(2) 모니터링은 전문성이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된다. 모니터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표본을 요구하거나 추출할 권한이 있다. 제43조제4항이 적용된다.</p> <p>(3) 모니터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행을 위탁받은 자는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지 업무시간에 제품이 생산, 제조 또는 유통되는 토지와 사업장 및 그에 부속되는 사업장들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 제1문에 언급된 토지와 공간의 소유주와 소유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제1문에 따른 조치들 및 표본의 채취를 용인하고, 모니터링의 수행자가 그 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지원을, 특히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모니터링 수행자에게 공간과 시설을 안내, 설명하고, 공간과 제품의 용기를 열어 주며 표본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2문에 언급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채취의 목적을 알려 주어야 하며, 제4항을 제외하고는 표본의 검사에 이어서 제39조제1항제1문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p>

원 문	번 역 문
<p>Einrichtungen zu bezeichnen, Räume und Behältnisse zu öffnen und die Entnahme der Proben zu ermöglichen. Die in Satz 2 genannten Personen sind über den Zweck der Entnahme zu unterrichten; abgesehen von Absatz 4 sind sie auch darüber zu unterrichten, dass die Überprüfung der Probe eine anschließende Durchführung der Überwachung nach § 39 Absatz 1 Satz 1 und Absatz 2 und 3 zur Folge haben kann.</p> <p>(4) Proben, die zur Durchführung der Überwachung nach § 39 Absatz 1 Satz 1 und Absatz 2 und 3, und Proben, die zu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ntnommen werden, können jeweils auch für den anderen Zweck verwendet werden. In diesem Fall sind die für beide Maßnahmen geltenden Anforderungen einzuhalten.</p> <p>(5) Die zuständigen Behörden übermitteln die bei de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rhobenen Daten an 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zur Aufbereitung, Zusammenfassung, Dokumentation und Erstellung von Berichten; 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übermittelt dem Bundesinstitut für</p>	<p>(4) 제39조제1항제1문,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채취되는 표본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채취되는 표본은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 조치에 적용되는 조건들이 엄수되어야 한다.</p> <p>(5) 관할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수집되는 정보를 그 통계와 정리, 문서화,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전달하며,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수집된 정보의 평가를 위해 이를 연방위험평가원에 전달한다. 개인정보는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제39조제1항제1문,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독 수행이나 모니터링</p>

원 문	번 역 문
<p>Risikobewertung die bei de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rhobenen Daten zur Bewertung, Personenbezogene Daten dürfen nicht übermittelt werden; sie sind zu löschen, soweit sie nicht zur Durchführung der Überwachung nach § 39 Absatz 1 Satz 1 und Absatz 2 und 3 oder zur Durchführung des Monitorings erforderlich sind. Sofern die übermittelten Angaben die Gemeinde bezeichnen, in der die Probe entnommen worden ist, darf 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diese Angabe nur in Berichte aufnehmen, die für das Bundesministerium, für das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sowie für die zuständigen Behörden des Landes bestimmt sind, das die Angaben übermittelt hat. In den Berichten an die Länder sind außerdem die Besonderheiten des jeweiligen Landes angemessen zu berücksichtigen. 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veröffentlicht jährlich einen Bericht über die Ergebnisse des Monitorings.</p>	<p>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삭제, 소멸되어야 한다. 전달된 정보에 기재된 사항들이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집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경우에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상기 사항들을 연방당국과 연방환경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및 상기 사항들을 전달한 해당 주의 관할기관에 보고할 보고서에만 인용을 할 수 있다. 각 주(州)에 보고할 보고서에는 그 밖에도 각 주(州)의 특성이 적절히 고려된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매년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다.</p>

다. 식품안전 정보관리

식품안전 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동반되는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는 식품안전 위험관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 위험관리자와 위험평가자 간의 정보교환 및 식품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교환을 아우른다.

(가) 식품안전 관리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

독일은 연방과 각 주(州)를 망라한 관계관청의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플랫폼인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전문정보시스템’(FIS-VL)³²⁾ 서비스를 2005년부터 제공하여, 2010년 기준 1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다.³³⁾ 그리고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 식품안전 관리자와 소비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

독일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관할 행정청은 식품·사료의 표시, 제조·가공·유통된 식품·사료의 명칭 및 회사,

32)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전문정보시스템’(FIS-VL: Fachinformationssystem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https://fis-vl.bvl.bund.de/share/page/> (최종 방문일: 2017. 7. 31.)

33)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전문정보시스템’(FIS-VL)에 관한 설명:

www.bvl.bund.de/DE/08_PresseInfothek/01_FuerJournalisten/01_Presse_und_Hintergrundinformationen/07_DasBundesamt/2010/2010_10_04_pi_fisvl.html?nn=1401276 (최종 방문일: 2017. 7. 31.)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통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여야 한다.³⁴⁾ 관할행정청이 공공에 제공한 정보가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초사실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난 때에는, 관련 경제주체가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한다.³⁵⁾

식료품업체나 사료업체는 업체에 존재하는 식료품이나 사료 내의 건강상 유해한 물질 및 식물보호제, 약물학적 효능을 갖는 물질, 중금속, 마이코톡신(진균독소, 곰팡이 독소) 그리고 미생물의 함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업체명과 소재지를 명시하여 관할 기관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³⁶⁾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주제인 “산업 4.0(Industrie 4.0)”에 발맞추어 “식품 4.0”(Lebensmittel 4.0: 레벤스미텔 4.0)이라는 관점에서 식품안전 관리 의사소통 방식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의 “식품 4.0”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횡적·종적 가치창조가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로 소통하면서 투명성, 예측가능성, 품질과 고객 중심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안으로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³⁷⁾

34)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40조제1항

35)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40조제2항

36)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 제44a조

37) 독일연방영양산업협회(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Ernährungsindustrie: BVE)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밭에서 식탁까지 - 제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다”(„Vom Acker bis zum Teller -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hat begonnen“), 2015. 9. 11. 참조.
<http://www.bve-online.de/presse/bve-aktuell/aktuell-150911/aktuell-150911-00-position-ernaehrungsindustrie>

원 문	번 역 문
<p>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p> <p>§ 40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p> <p>(1) Die zuständige Behörde soll die Öffentlichkeit unter Nennung der Bezeichnung des Lebensmittels oder Futtermittels und des Lebensmittel- oder Futtermittelunternehmens, unter dessen Namen oder Firma das Lebensmittel oder Futtermittel hergestellt oder behandelt wurde oder in den Verkehr gelangt ist, und, wenn dies zur Gefahrenabwehr geeigneter ist, auch unter Nennung des Inverkehrbringers, nach Maßgabe des Artikels 10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informieren.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in der in Satz 1 genannten Art und Weise soll vorbehaltlich des Absatzes 1a auch erfolgen,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r hinreichende Verdacht besteht, dass ein kosmetisches Mittel oder ein Bedarfsgegenstand ein Risiko für die menschliche Gesundheit mit sich bringen kann, 2. der hinreichende Verdacht besteht, dass gegen Vorschriften im Anwendungsbereich dieses Gesetzes, die dem Schutz der 	<p>「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p> <p>제40조 공공에의 정보공개</p> <p>(1) 관할기관은 가능한 한, 식품이나 사료의 제조 또는 가공 시에 또는 유통 시에 사용되었던 명칭이나 상호가 포함된 식품이나 사료의 제품명, 그리고 식품업체나 사료업체의 상표의 언급 하에 위험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는 유통업자도 마찬가지로 언급하여, 유럽공동체법령 (Verordnung (EG) Nr. 178/2002)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공공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1문에 언급된 형태와 방식으로의 정보공개는 제1a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다음의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의혹이 존재하는 경우, 2.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규정들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의혹이 존재

원 문	번 역 문
<p>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vor Gesundheitsgefährdungen dienen, verstoßen wurde,</p> <p>3. im Einzelfall hinreichende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ss von einem Erzeugnis eine Gefährdung für die Sicherheit und Gesundheit ausgeht oder ausgegangen ist und aufgrund unzureichender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 oder aus sonstigen Gründen die Unsicherheit nicht innerhalb der gebotenen Zeit behoben werden kann,</p> <p>4. ein nicht gesundheitsschädliches, aber zum Verzehr ungeeignetes, insbesondere ekelerregendes Lebensmittel in nicht unerheblicher Menge in den Verkehr gelangt oder gelangt ist oder wenn ein solches Lebensmittel wegen seiner Eigenart zwar nur in geringen Mengen, aber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in den Verkehr gelangt ist, 4a. der durch Tatsachen hinreichend begründete Verdacht besteht, dass gegen Vorschriften im Anwendungsbereich dieses Gesetzes, die dem Schutz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vor Täuschung dienen, in nicht nur unerheblichem Ausmaß verstoßen wurde,</p>	<p>하는 경우,</p> <p>3. 개개의 경우에 제품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했고, 불충분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하여 제시된 기간 내에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p> <p>4. 건강을 해치지는 않지만 섭취에는 부적합한, 특히 역겨운 식품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되었던 경우 또는 그러한 식품이 그 고유한 성질이나 형태로 인해 미량만 유통되었지만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p>

원 문	번 역 문
<p>5. Umstände des Einzelfalles die Annahme begründen, dass ohne namentliche Nennung des zu beanstandenden Erzeugnisses und erforderlichenfalls des Wirtschaftsbeteiligten oder des Inverkehrbringers, unter dessen Namen oder Firma das Erzeugnis hergestellt oder behandelt wurde oder in den Verkehr gelangt ist, erhebliche Nachteile für die Hersteller oder Vertreiber gleichartiger oder ähnlicher Erzeugnisse nicht vermieden werden können.</p> <p>In den Fällen des Satzes 2 Nummer 3 bis 5 ist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zulässig nach Abwägung der Belange der Betroffenen mit den Interessen der Öffentlichkeit an der Veröffentlichung.</p> <p>(1a) [...]</p> <p>(2)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nach Absatz 1 durch die Behörde ist nur zulässig, wenn andere ebenso wirksame Maßnahmen, insbesondere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durch den Lebensmittel- oder Futtermittelunternehmer oder den Wirtschaftsbeteiligten,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getroffen werden oder di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nicht</p>	<p>5. 이의가 제기되어야 할 제품을 거론하지 않으면, 또는 필요에 따라서 경제주체나 유통업자가 제조나 가공 또는 유통 시에 사용했던 제품명이나 상호를 거론하지 않으면, 동일한 형태나 유사한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의 현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간주할 만한 개별정황들이 존재하는 경우.</p> <p>제2문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공공에의 정보공개는 공개 시에 공공연한 이익을 얻는 당사자들의 이해경쟁을 고려하여 허용된다.</p> <p>(1a) [...]</p> <p>(2) 제1항에 따른 기관을 통한 공공에의 정보공개는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다른 조치, 특히 식품업체나 사료업체 또는 경제주체를 통한 공공에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제1문과 상관없이 기관 측에서는</p>

원 문	번 역 문
<p>erreichen. Unbeschadet des Satzes 1 kann die Behörde ihrerseits die Öffentlichkeit au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oder 2. eine Rücknahme- oder Rückrufaktion durch den Lebensmittel- oder Futtermittelunternehmer oder den sonstigen Wirtschaftsbeteiligten hinweisen. <p>Die Behörde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auch auf ein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einer anderen Behörde hinweisen, soweit berechnigte Interessen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in ihrem eigenen Zuständigkeitsbereich berührt sin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 정보 또는 2. 반품이나 회수조치를 식품업체나 사업체 또는 기타 경제주체를 통해 공공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p>제1문의 조건하에서 기관은 자체 관할범위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어 있는 한, 다른 기관의 공공에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다.</p>

3. 시사점

식품안전 관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하나이다. 식품안전 사고는 항상 새로운 위험인자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 후에는 파급효과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매우 크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가 절실하다. 그리고 적실성 있는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 이전의 예방 체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식품안전 관리 주체 간, 관리주체와 소비자 사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복수의 입법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식품안전 관련 통합법전 형태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규율 대상은 식품, 사료 및 화장품과 생활용품으로 하여 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식품 생산 과정의 이전 단계와 포장 등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까지 고려한 입법을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식품안전 관리감독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

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며 사전 예방에도 취약하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리 감독을 연방식품농업부에 일원화하고, 위험관리(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와 위험평가(연방위험평가원)를 분리하여 운영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사례는 좋은 참조점이 될 것이다.

셋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예방이 중시되고, 이를 위해 연방과 각 주(州)에 걸친 식품안전 모니터링 제도를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LFGB)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연방위험평가원에 전달되어 식품 위험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넷째, 관할행정청은 식품·사료의 표시, 제조·가공·유통된 식품·사료의 명칭 및 회사,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통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청이 공공에 제공한 정보가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초사실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 경제주체가 정보공개신청을 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한다.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 주제인 “산업 4.0”(Industrie 4.0)에 더불어 “식품 4.0”(Lebensmittel 4.0)이라는 관점에서 식품관리 정보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 23 카페리어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3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33 그라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35 일본 국선번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46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47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5. 11)

48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2015. 12)

【2016】

49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6. 2)

5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2016. 2)

51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2016. 3)

52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2016. 5)

53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2016. 6)

5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6. 6)

55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2016. 7)

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2016. 10)

57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2016. 12)

58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 59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 60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2016. 12)

【2017】

- 61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2017. 1)
- 6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2017. 3)
- 63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2017. 3)
- 64 공정거래 I-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2017. 7)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5호

발 행 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7년 8월 10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31-9720109-001325-14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9-001325-14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